

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21. 5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의“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추진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정책 방안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 신청 및 결과, 성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관련 운영규정 자문에 관한 사항
4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 소요예산의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총장, 경영관리실장,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평생교육원장, 미래융합학부 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부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20%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제7조(업무관리 및 간사) 위원회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에서 관장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5-0-34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